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

의 안 번 호	21-32
--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. 4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규정된 ‘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’ 관련 사항이 대통령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근거 마련을 위해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 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(제1조)
- 나.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등(제2조)
- 다. 교육실시 방법(제3조)
- 라. 교육강사(제4조)
- 마. 교육의 유예(제5조)
- 바. 교육이수자 관리(제6조)

## 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
1)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1조(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)

2)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5조(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)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 : 2021. 2. 25. ~ 3. 17. (제출된 의견 없음)

2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3) 기획예산과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: 해당없음

4)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
5)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6) 제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21.3.30.)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등)**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 다만,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준수사항, 재난예방, 제도변경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연 3시간으로 한다.

④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.

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.

**제3조(교육실시 방법)** 구청장은 법 제11조의 교육을 반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. 다만, 노래연습장을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**제4조(교육강사)**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 강사로 구성해야 한다.

1. 음악산업 제도 등에 관한 전문가
2. 재난예방 전문가
3. 그 밖에 음악산업 진흥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을 실시한 강사에게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5조(교육의 유예)**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간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.

1. 교육대상자의 노래연습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
2.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
3. 그 밖에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

**제6조(교육이수자 관리)** 구청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 명부, 교육 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·비치하여 3년간 보관·관리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안 제4조제2항

### 제4조(교육강사) ① (생략)

-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을 실시한 강사에게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  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## 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

## 4. 작성자 : 관광일자리국 문화예술과 박은경 (☎3153-8361)